

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철회서

재산등록 의무자	성명	소속	
	생년월일	직위(직급 등)	

본인과의 관계	성명	허가신청 철회사유	서명 또는 인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2조제4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」 제30조제8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철회합니다.

년 월 일

재산등록의무자

(서명 또는 인)

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

유의사항

- 이 신청서는 고지거부 허가신청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합니다.
-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 파악 등을 위해 당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.
- 신청서에는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.